

인천지방법원 2019. 5. 24 선고 2018나6376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19. 5. 24 선고 2018나63764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18. 7. 24 선고 2018가단2904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용석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성우

피고, 피항소인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임영준

변론 종결2019. 5. 3.

판결 선고2019. 5. 24.

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8가단2904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6. 3. 28. 접수 제70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,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이광우

판사김기풍

판사김은엽